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혁신역량 및 성장성이 우수한 여성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 3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6. 3월 ~ 12월
- 사업내용 : 도내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마케팅 지원
- 모집기간 : 26. 3. 12.(목) ~ 4. 7.(화) 17:00 限 *기존 3월 31일에서 7일 연장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업력 만 3년 이상 여성기업
- 신청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 업력 만 3년 이상(2023년 3월 11일 이전 사업자등록)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유효기간 내)

<창업일 기준>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소재지 기준>

-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본점소재지
- ▶ (공장)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지원규모 : 총 55개사

※ 사업 공고문 및 사업 운영지침 등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신청 기업)에 있음

2 지원사업 세부 내용

○ 과제 추진 기간 : 선정일 ~ 10월 31일 (금년도 기간 내 추진 가능한 과제로 신청)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용의 80%, 기업당 지원금 최대 80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최초 본 사업 신청 및 지원 신청서 작성 시 총 사업비용의 80%, 지원금 최대 8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작성 요망

※ 총 소요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80% 지원 (그외 비용 기업 부담)

※ 지원금 선지급은 불가하며, 과제 추진 소요비용은 기업이 선집행한 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시점 이후 검토 절차를 통해 사후 지급

○ 지원 항목 및 지원금 한도

- 최대 지원금 한도 내 기업이 자유롭게 복수 과제 선택 및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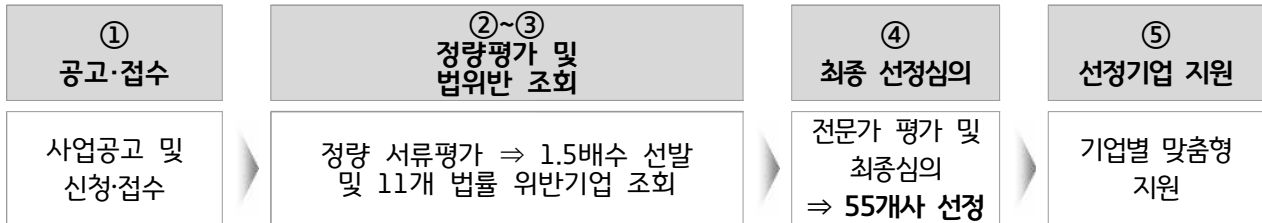
과제 구분	세부 과제	지원금 한도
홍보기반구축	홈페이지, 카탈로그, 홍보동영상 제작	800만원
	제품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200만원
온라인마케팅	SNS · 온라인 마케팅	800만원
전시박람회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800만원
컨설팅	마케팅 관련 전문가 컨설팅	600만원
교육 지원	4차 산업 대응 등 마케팅 교육	200만원

○ 지원 절차(최종 선정 이후)

①	②	③	④	⑤
소요 비용 적정성 최종 검토	과제 승인 및 지원금 결정	개별기업 과제수행	기업 선지출 및 완료보고제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KGC)	(KGC)	(선정기업)	(선정기업)	(KGC)
5월	5~6월	5~6월-완료시	완료시-10월 말	수시-11월 말

3 심사 진행절차 및 내용

① 심사 진행 절차



② 심사 절차 및 내용

○ 서류(요건) 검토

- 검토내용 : 사업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기업 중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대상

- 여성기업확인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
- 지원 제외 업종(별첨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과거 3년 이내 동일 사업(우수여성, 여성기업 맞춤형, 여성기업 마케팅) 수혜기업
- 해당 외 본 공고문 및 사업운영지침 상의 지원 제외, 취소 대상 기업

※ 반드시 사업 접수 기간 내 필수서류 제출 요망

○ 1차 서류(정량) 평가

- 평가대상 : 서류 검토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접수) 기업
- 평가방식 : 제출서류 통한 정량평가로 총점 100점 만점 기준 고득점 순 2차 최종 심사위원회 상정
- 선정규모 : 최종 선정기업 규모의 1.5배수 내외 선정

- 평가내용 : 경영안정성 및 고용 기여도, 기술 역량 등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기술역량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 최근 3년 내 기술개발과제 참여 실적 보유 · 특허·규격인증, 기술관련 수상실적	20점
경영안정성	· 전년도 매출증가율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전전년도 매출증가율 · 부채비율	40점
고용기여도	·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 전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20점
가산점	·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경영혁신형(메인비즈) 인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등 경기도 우수인증기업 · 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산업단지RE100 참여기업 · ESG진단평가 우수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 · 주 4.5일제 추진기업 · 착한기업 · 가족친화기업 · 경기임팩트유니콘기업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 산재없는 기업	20점
점수 합계		100점

○ 법 위반 사실 조회

- 시행 근거 :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 실시 방법 : 제출서류 검토 및 고시명단 조회, 관련 부처 협조 요청 등
- 조회 내용 : 사업공고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관련 법률 위반 사실 조회
- 적용 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관련 조례에 제시된 11개 법률의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력 확인
- 결과 활용 : 최종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정 심의에 반영.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단,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별첨2)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서식1-3)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26년 신설 항목)
 -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 건은 최종 확정판결 확인 시 제한 기준 적용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2025.1.17.) 및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법률 분야 조사 및 심의 진행(경기도고시 제2025-23호)

-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❽ 폐기물관리법, ❹ 대기환경보전법, ❸ 소음진동관리법, ❹ 물환경보전법
- (납세) ❶ 국세기본법, ❷ 지방세기본법

○ 2차 최종 심사·평가 위원회

- 심의대상 :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
- 선정규모 : 최대 55개사 선정
- 위원구성 : 외부 전문가 3~5명 내외
- 평가내용 : 계획 적정성, 기업역량, 사업성, 기대효과 등 정성평가
- 평가방식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기반 기업별 발표평가(PT)

구분	평가기준	
정성평가 (100점)	계획적정성(30점)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지원 필요성 등
	기업역량(30점)	대표자 리더십 및 기업혁신 노력, 아이템(서비스 등)의 차별성 등
	사업성(20점)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도 및 대응방안 등
	기대효과(10점)	매출 성과 및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등
	정량평가(10점)	1차 서류 평가(100점) 환산 점수 적용

- 선정기준 : 법위반 기업 조회 결과 내용 반영한 최종 위원회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기업을 대상, 고득점 순 선정
- 심의위원 최대 및 최소 점수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의 고득점 순 선정
 - ※심의위원이 4인 이하인 경우 심의위원 총 점수의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고득점 순 지원결정 대상 선정
- 예비기업 선정 : 최종 심사·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기업으로 결정되지 않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예비 선정기업으로 결정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3. 12.(목) ~ 2026. 4. 7.(화) 17:00까지 *기존 3월 31일에서 7일 연장
- 신청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신청하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동의, 법위반 사실 관련 동의 → 신청 정보 입력 및 필수 서류 (①신청서 ②기업소개서 등)업로드 → 신청상품 등록 → 접수완료

※ 대표자 외 담당자 연락처 기입시 반드시 연락 받을 수 있는 번호로 기재

② 제출서류

- 대표자의 직인(또는 서명)이 필요한 제출서류에 직인(또는 서명)이 누락 되었을 시 해당 서류는 불인정 됨
- 필수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택 제출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점수(기술역량 및 가점) 미부여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최근 3년 내 발급분을 인정
- 지원 신청서 및 신청기업 소개서의 경우, 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일괄 스캔 및 하나의 파일(PDF) 또는 압축파일(Zip)로 통합하여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란에 업로드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필수제출 (과제확인)	① [서식1] 지원 신청서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내 첨부파일 확인
	② [서식1-1] 신청기업 소개서	
필수제출 (조건확인)	③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인정 유효기간 내 증명서로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경기도 소재 여부 확인) → 제출 시 발급일자는 공고기간 내 문서로 제출	국세청 홈택스/정부24 www.hometax.go.kr www.gov.kr 한국산업단지공단 www.factoryon.go.kr

	⑤ 여성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인정 유효기간 내 발급분 제출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필수제출 (평가서류)	⑥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전분) - 2023년도 재무제표 1부 - 2024년도 재무제표 1부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부분 확인) - 2024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⑧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월 귀속분) - 202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월 귀속분) 1부 - 2024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월 귀속분) 1부 - 2025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월 귀속분) 1부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해당시 제출 (평가서류) ※ 제출 여부 기업 선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또는 승인 공문(인정기간 최근 3년 이내) · 국내·외 특허출원서, 기술 인증서(해당 시 각 인정 유효기간 내) · 기술관련 표창, 상장(인정기간 최근 3년 이내) → 표창 및 상장 제출기준 : 도지사 이상급 표창 또는 상장만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 특허청, 인증기관, 주관기관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인증서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 경기도 우수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 경기도 지사명의 인증만 해당됨)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 ESG진단평가 우수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 · 주 4.5일제 추진 기업 · 착한기업 · 가족친화기업 · 경기임팩트유니콘기업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 산재없는 기업*	각 발급처 *산재없는 기업은 한국사업안전보건공단 최근 3개년 조회 결과 제출

③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온라인(www.kgcbrand.com) 신청 및 접수만 가능. 별도 이메일 통한 제출 불인정
- 신청 마감 시점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음. 신청에 여유가 있도록 마감 종료일 이전에 최종 접수 완료 요망.
- 온라인 신청 중 접수 마감 종료시간에 따른 차단 등으로 인해 최종 신청(접수) 미완료의 경우 신청자(신청기업) 책임임
- 대행사(외주용역사) 또는 기타 외부 전문업체의 서류 대리 작성·신청은 불가하며, 신청기업이 지원 요건 등 직접 확인 없이 단순히 대행사(외주용역사) 또는 기타 외부 전문업체의 추천 등으로 사업을 접수했을 시 이에 따른 정보 오기입 및 지원 제외 대상자 여부, 제출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신청기업) 책임임
-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파일 업로드 요망
 - 단, 부득이 여러 개의 PDF 파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하나의 압축파일(Zip)로 통합하여 업로드 요망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5 신청 제외, 선정·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 신청 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으로 동 사업과 동일한 과제를 이미 신청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

- 최근 3년 내 동일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
- 동일사업 : 「우수 여성기업 선정 및 홍보」,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 그 외 본 사업운영지침 사항 적용함

○ 지원결정 취소

- 주관기관장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업장 휴·폐업, 경기도 외 이전, 여성기업 자격 상실 등 신청 및 지원 자격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 지원 결정 후 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하여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
- 허위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승인된 동일 과제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았을 경우
- 추진기간 중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그 외 본 사업운영지침 사항 적용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

-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의 과제추진 중도포기, 과제 중단, 제출한 서류의 허위 판명, 타 기관 중복수혜, 완료점검 결과 지원 불인정 등으로 지원결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와 지원금 환수에 대해 결정한다.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과제 중단/미완료 등으로 지원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지원결정 취소 외에 다른 제재 사항은 없다.
- 단, 허위서류 제출, 타 기관 중복수혜 등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재한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그 외 본 사업운영지침 사항 적용함

6

사업 참여 유의사항

①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준수

○ 조례 제6조에 따라, 법위반 사실 확인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① 조례 제2조제1호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나.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다.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라.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②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③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기존)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변경)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4)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

- 단,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다.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④ 법위반사실 확인(변경)

(기존)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변경)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⑤ 이의 및 구제신청(변경)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4) 제출

(기존)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 (필요시 기

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변경)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 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⑥ '26년 신설 및 변경 항목

구 분	2025년	2026년	비 고
위반사실 적용법률	-	○ [신설]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	경기도 고시 제 2026-8 호 (2026.1.8)
사업참여 제한조건	-	○ [신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시 평가 총점 의 20% 감점 미적용 ○ [신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사실확인	○ [현행] 사업부서에서 선정(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전 처분기관에 법위반사실 확인(선정기업 수의 120~150% 범위 조 회)	○ [변경] 사업부서에서 선정(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전 처분기관에 법위반사실 확인(선정기업 수의 120~150% 범위 조 회) - <u>처분기관 의뢰시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을 첨부하여, 처분기관에서 유예대상 법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회신할 수 있도록 해안함</u>	

⑦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홈페이지 신청 시 동의 절차)

② 공정한 [공모 - 심사 - 선정] 추진

○ 공개모집 및 외부심사위원 심사(평가)를 통한 공정한 지원기업 선정

③ 가점 제도 운영

○ 평가표 가산점 항목 참조

- ④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추진

☎ 제출 및 문의처

☎ 사업 주관부서 : 유통사업실

☎ 관련 문의 : 과장 조운서 (Tel. 031-5171-5325)

주임 박은영 (Tel. 031-5171-5326)

※ 담당자 사정으로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통화가 되지 않으셨을 경우 이메일 pey1835@kgcbrand.com 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업공고문 1부
2. 사업운영지침 및 신청서식 1부

별첨1

신청제외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신청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32)	이동 음식점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191)	제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공공,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96912)	가정용세탁업
	(96913)	세탁물공급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96991)	예식장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지원 제외

별첨2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구 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구 분	법령	법위반 행위
24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25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 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 실시
40	물환경보전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 이행
45	물환경보전법	•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 시행
47	지방세기본법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